

#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13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년 6월 5일

발 의 자: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: 심현정, 김광성, 남진삼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이 2023. 7. 18일 시행 예정으로, 평창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 정책의 방향에 발맞추고 평창군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 규정(안 제3조 ~ 제4조)

다. 지원사업, 교육 및 홍보사항, 민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(안 제5조 ~ 제7조)

라.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평창군 아동·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입법예고 : 2023. 4. 26. ~ 2023. 5. 16.(20일간), 의견 없음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3. 4. 12.~ 2023. 4. 24., 의견 없음

##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평창군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**제3조(책무)**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**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
2.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,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「평창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」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사업)**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
2.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 사업
3. 피해자등의 상담,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
4.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교육 및 홍보)**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,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,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.

**제7조(협력체계 구축)**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, 법률 및 수사 기관,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「평창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」 제3조제3항의 협력체계와 함께 구축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,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8조(비밀 준수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

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+

## [관련법령]

### 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〉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토킹행위”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  - 나.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(이하 “주거등”이라 한다)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  - 다.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(이하 “물건등”이라 한다)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
  - 라.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
  - 마.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
2. “스토킹범죄”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피해자”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4. “피해자등”이란 피해자 및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.

### 〈평창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〉

- 제3조(책무)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·치료를 위하여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- ④ 군수는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4